

# Samil Flash

##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 시행 (이전가격 관련)

### About the Transfer Pricing Practice: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Samil PwC") is the preeminent transfer pricing advisor in Korea and serves the world's leading companies. With nearly 30 full-time professionals, we are the largest transfer pricing practice in Korea, by far. Our multidisciplinary team of specialists includes experts in law, economics, finance, tax and accounting. Our senior professionals serve as external advisors to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and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 on tax policy and regulatory matters. We are an active member of the PwC Global Transfer Pricing Network and an integral part of the Samil PwC tax practice, which is comprised of over 300 professionals and is the largest in Korea.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he Samil PwC Transfer Pricing Practice can help you, please contact:

**Henry An**  
Partner  
Phone: +82-2-3781-2594  
Email: henryan@samil.com

**Heui-Tae Lee**  
Partner  
Phone: +82-2-3781-9083  
Email: htlee@samil.com

**Jung-Il Joo**  
Partner – Japanese Practice  
Phone: +82-2-709-0722  
Email: ijoo@samil.com

**Shin-Jong Kang**  
Partner – Financial Services  
Phone: +82-2-709-0578  
Email: sjkang@samil.com

This document has been prepared by the Transfer Pricing Practice of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is the Korean member firm of PricewaterhouseCoopers.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the network of member firms of PricewaterhouseCoopers Internation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 시행 (이전가격 관련)

중국은 2008.1.1.부터 개정된 기업소득세법(이하 '신기업소득세법'이라 함)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이하 '외국기업 소득세법'이라 함)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외국계 기업과 중국기업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중전 외국기업소득세법에서 규정하던 정상가격 원칙은 신기업소득세법 제41조 내지 제48조의 '특별납세조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특별납세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가격 원칙:** 기업과 그 관련기업 간의 업무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과세대상수입 또는 소득액을 감소시킨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조정할 권리가 있음.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APA):** 기업은 세무기관에 그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 가격결정원칙과 계산방법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기업과 협상하여 사전합의 할 수 있음.
- **관련기업 간 업무거래 보고의무:** 기업은 세무기관에 매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 제출 시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에 대해 해당연도의 관련업무거래 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이하 중국에서 최근 이전가격과 관련된 규정(초안)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 하였습니다.

### 특별납세조정 관리규정(초안)

특별납세조정 관리규정의 세부지침으로서, 기존의 이전가격 관련 법규를 통합 및 정비한 '특별납세조정 관리규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동 관리규정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신기업소득세법의 시행시점인 2008.1.1.부터 소급적용될 전망입니다.

**특별납세조정 관리규정(초안)의 주요 내용**

특별납세조정 관리규정(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기업의 판단기준: 지분을 기준 20% (총래 25%)
-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기업은 관련기업 간 업무거래에 관하여 매년 문서 작성 및 보관의무 (거래규모 등에 따라 차등)
- 이전가격 방법(정상가격 산출방법): OECD에서 인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우선순위 없이 모두 인정. Berry Ratio를 TNMM의 PLI로 인정
- 이전가격 조사 및 조정: 이전가격 조정시 중위값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5년간 사후관리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종래 일방적 APA 관련 규정만 있었으나, 쌍방적 APA 절차도 명시
-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 "CSA"): 종래에도 인정되던 무형자산 개발을 위한 원가분담약정 외에, 서비스 관련 원가분담약정도 추가로 인정
- 특정외국기업 관리: 조세피난처 소재 기업 관련 내용
- 자본약화관리: 과소자본세제 도입 (아직 기준 부채비율은 정해지지 않음)
-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전가격 이외의 조세회피행위도 조사대상
- 상호조정: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관련 절차의 명시

특별납세조정 관리규정(초안)과 관련하여, 기업이 올해부터 당장 준비하여야 하는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의 내용이 가장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하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관련거래가 있는 기업은 매년 정기 기업소득 신고 전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전가격 보고서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과세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내에 회사의 날인과 책임자의 서명을 기재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10년치 이전가격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1) 중국 내 거래만 있는 경우, 2) 관련기업 거래금액이 2천만 RMB 이하인 경우, 3) APA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관련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소득세 신고 시 제출자료(법정서식사용)
  1.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관계
  2.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거래내역
  3.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유형자산 매입 및 매출내역
  4.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서비스 거래내역
  5.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금융 거래내역
  6.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유·무형자산의 이전내역
  7.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과소자본세제 검토내역
  8. 납세자와 해외관련기업간 해외 송금내역 (배당금, 이자, 세금, 자산이전지출, 수수료 등)
  9.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내역
  10. 중국 CFC Rule에 따라 해외소득의 중국 내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중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관련 해외 소득 내역

• 이전가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조직구조: 본사 및 관련 기업의 전체적인 조직 구조 및 적용 세율 등
2.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회사에 대한 개요 및 경영전략, 산업 및 시장분석, 기능 및 위험분석, 재무분석 등
3. 관련기업간 거래상황: 해외 및 국내 거래, 무형자산 거래 포함
4. 비교가능성 분석: 분석시 각종 고려요소 및 사유 등
5. 이전가격 방법의 선택 및 사용: 선택의 사유 및 다른 방법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 등
6. 원가분담약정 관련 내용 (해당사항 있는 경우)
7. 기타 관련 문서 - 이전가격분석 관련내용

이전가격 보고서는 기업의 관련기업 정보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기업 거래금액이 2천만 RMB 초과 1억 RMB 이하인 기업은 간소화된 이전가격 보고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전가격 관련 벌과금**

이전가격 관련 제반 규정이 강화되면서 벌과금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 정기 기업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이전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2천 RMB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요할 경우 2천 RMB ~ 1만 RMB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실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문서제공을 거절한 경우, 1만 RMB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요할 경우 1만 RMB ~ 5만 RMB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기업소득세법 제44조에 의해 당해 기업의 과세표준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관련기업간 거래가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은 기업소득세법 제44조에 의해 당해 기업의 과세표준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출된 과소납부액에 대해 기업소득세법 제48조에 의한 특별이자가 추가 징수됩니다 (2008년 이후 거래).

**중국의 최근 이전가격 세무조사 경향**

중국은 국가세무총국이 전국의 세무조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그룹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서면조사 위주이나, 법인세 조사 후 이전가격 조사로 확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 세제혜택 기간 종료 이후 이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 거래규모에 비해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최근 천진 지역의 경우 영업이익률 3% 이하인 기업 위주로 조사대상 선정)
- 이익 수준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큰 경우

- 로열티 등 무형자산 대가 지급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관련회사가 조사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수행기간은 통상 1년 이상 3년 이내이며, 최장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비공개 정보(Secret comparables)를 이용하여 기업의 과세소득을 최장 과거 10년까지 소급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APA의 경우에는 공개 정보만 이용됩니다).

국가세무총국은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최근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Guoshuihan [2007] 236호: 해외에 있는 본사의 전반적인 경영계획과 제품 주문에 기반하여 단순 생산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정책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시장개척 및 판매기능 등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비효과적인 경영정책, 생산능력의 비활용 및 제품의 시장수요감소 등의 원인에 의한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지 않아야 함.
- Guoshuihan [2007] 363호: 이전가격 조사 시 피감사기업과 지방세무국은 국가세무총국에게 기업의 기능분석 요약표, 관련 기업간 거래에 대한 재무분석표 등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즉, 실질적인 역할이 내료가공(무상사급) 또는 진료가공(유상사급) 형태인 생산법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이익률이 확보되어야 하며, 시장가격 변동이나 본사의 상황 등에 따라 이익률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중국은 이전가격 관련 정보의 축적과 조사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이후 북경 및 천진지역 상당수 회사가 기능분석 요약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았으며, 최근 양주에서 이전가격 담당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주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무형자산에 관한 집중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열티 거래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의미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인데 가치가 창출되지 않으면 비용을 지급할 이유도 없으므로, 만약 어떤 기업이 계속 낮은 수준의 이익률을 기록할 경우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 과세당국은 종래 자산거래를 위주로 이전가격 조사를 실시해 왔고, 실제 이전가격으로 과세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국내 관련기업간 거래, 기술사용료 지급거래, 서비스료 지급거래, 비교적 새로운 이전가격방법인 이익분할방법에 의한 거래 등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이전거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전가격 조사 또는 과세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기업소득세법과 특별납세조정 관리규정의 제정은, 중국의 이전가격 세제 강화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전반, 특히 무형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중국 이전가격 환경변화에 따른 회사의 대응방안

##### • 본사 통합관리의 필요성

중국에서의 이전가격 과세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관련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세무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국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한다면, 그룹의 전체적인 이익과는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자회사들의 이전가격 문제는 본사가 전사적인 경영전략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하고 일관성 있게 통합 관리하여야 합니다.

#####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의 활용

올해 5월 20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국세청장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장은 APA를 활성화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샤오지에 국가세무총국장 또한 지난해 최초로 타결된 한-중 APA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하였습니다.

중국이 특별납세조정 관리규정을 초안대로 제정하여 공포한다면, 중국은 이전가격 세제를 가장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됩니다.

이에 대한 완충방안으로 한-중 양 과세당국은 APA 제도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급증하는 중국에서의 이전가격 세무위험을 제거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하겠습니다.